



현안분석
2017-05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장 원 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the Diffusion of Open Accesses

연구자 : 장원규(부연구위원)

Jang, Won-kyu

2017. 11. 1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이 글에서 필자는 학술저작물에서 오픈엑세스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은 학술 출판 및 연구인프라의 혁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논증함
 - 오픈엑세스는 넓은 의미에서 논문과 연구데이터와 같은 연구성과물에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용 제한이 없음을 의미함. 골드 오픈엑세스와 그린 오픈엑세스로 구분할 수 있음
- 학술적인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엑세스 진흥의 필요
 - 계속해서 학술저작물에 대한 오픈엑세스를 장려하고 가치, 형평성,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며 공유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육성함
- 이 연구는 오픈엑세스에 관한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상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우리나라에서 오픈엑세스를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이 있는 공유마당 운영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이 기증된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CCL),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KOGL)
-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 오픈엑세스 코리아(OAK)

- 오픈엑세스 센트럴(OAK Central)은 국내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아카이빙 서비스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오픈엑세스 지원을 위한 정책과 법제

-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COM(2015) 192 final
- 유럽위원회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 COM/2016/0593 final
- 2003 베를린 선언,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2016 오픈엑세스 전략
- 독일의 저작권법, 지식사회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저작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Ⅲ. 기대효과

- 학술연구성과의 보급 및 활용 촉진
- 연구자, 정책입안자,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지식공유 촉진

▶ 주제어 : 오픈액세스, 저자 저작권, 창조적 자산공유 라이선스, 학술저작물, 공적 재원에 의해 생성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접근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 that the current endeavors to achieve open access in academic literature require a discussion about innovation in scholarly publishing and research infrastructure.
- Broadly speaking, open access means that research outputs, such as articles and research data, are free of restrictions on access and free of restrictions on use. A simple distinction may be made between gold and green open access.
- Need for Promoting open access to academical research finding
 - Continue to encourage open access to academic literature and to foster novel approaches to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that will allow knowledge essential for value, equity, and development to be shared and made widely available.
- By introducing and analysing laws and policies on open access, this study aims to draw suggestions for legislative reform of Korean laws.

II. Major Content

- Policies and Legislations to Support Open Access in Republic of Korea
 - Anyone can use freely sharing copyrighted works, where ‘shared yard’.
 - Copyright protection has expired, works of authorship, copy (including rights created a derivative work), donated the freedom to use a certain condition to use display work(CCL), a public agency that manages the creation, or public works by obtaining a free license means the display work(KOGL).
 - Public work : Countries or local governments, it is possible to write a work or contract issued by th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all of the copyright, refers to the work.
 - Open Access Korea(OAK)
 - OAK Central is a free archive of scholarly & scientific journal literature in Korea.
- Policies and Legislation to Support Open Access in European Union and Germany
 -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COM(2015) 192 final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6/0593 final
 -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Gesetz zur Angleichung des Urheberrechts an die aktuellen Erfordernisse der Wissensgesellschaft

III. Expected Effects

- Promoting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academical research findings.
- Promoting knowledge sharing among researchers, policy makers, and other stakeholders.

▶ **Key Words** : open access, authors' copyright, creative commons license, academic works, access to public funded research output

요약문	3
Abstract	7

제1장 서론 / 13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20
II. 연구의 방법과 범위	20
1. 연구의 방법	20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21

제2장 우리나라의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 23

I.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25
II. 오픈액세스 관련 제도	26
1. Open Access Korea(OAK)	26
2.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27

제3장 유럽연합과 독일의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 31

I. 유럽연합에서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33
1. 저작권법제 개혁 지침(안)	33
2.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	35
II. 독일에서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37
1. 저작권법상 오픈액세스 진흥	37

목차

- 2. 저작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40
- 3.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 42
- Ⅲ. 시사점 47

제4장 정리 및 개선과제 / 49

- I. 정 리 51
- II. 개선과제 52
 - 1. 이용허락과 그의 표준화 및 호환성 52
 - 2. 학술정보유통을 위한 저작권 관리와 법적 과제 55
 - 3. 공유자원으로써 학술저작물 상업적 이용의 한계 설정 55
- 참고문헌 57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II.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오픈액세스의 의의와 현황

지금 우리 사회와 경제는 데이터¹⁾와 지식에 기반한 정보²⁾가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1) 데이터(data)는 현실 세계에서 단순히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수집한 사실이나 값으로 자료라고 한다면, 정보(information)는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한 결과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와 정보”: 김연희, 데이터베이스 개론, 한빛아카데미, 20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071&cid=58430&categoryId=58430> (최근 접속일: 2017. 11. 8). 다른 한편 데이터에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입장에 최경진,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법”: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데이터이코노미, 한스미디어, 2017, 246쪽.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2호). 구체적으로는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상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같은 조 같은 호 가~라 목). 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에는 웹기록물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가 있다(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조의2).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19호). 다른 한편, 데이터는 데이터매체에 고정되어 있는 숫자, 문자, 말, 그림 등 표시(Zeichen) 또는 표시형체(Zeichengebilde)를 말한다, Schoch, IFG (2016), § 2 Rn. 18.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1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같은 법 제3조 1호).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법상 데이터와 정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비견할 수 있는 독일의 정보자유법상 정보의 개념은 저장방식과는 상관없이 모든 기록을 포함하나, 초안과 메모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같은 법 § 2 Nr. 1). 데이터와 정보에 대하여 다양하게 형성된 법적인 동일취급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에 Schoch, IFG (2016), § 2 Rn. 17.

핵심적인 동력이 되는 시대로 더욱 변화해 가고 있다.³⁾ 학술정보와 학술데이터는 일단 확보되면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한 조직 또는 개인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원칙이며, 데이터가 활용된 후 사라지지도 않는다.⁴⁾ 학술정보와 학술데이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도 많다.⁵⁾ 다만, 학술정보와 달리 학술데이터는 처리해야하는 원시의 조직화되지 않은 사실이다. 학술데이터를 의미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상황에서 학술데이터가 처리, 구성 또는 제시될 때 학술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유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copyleft 운동에서 비롯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망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누구나 데이터와 정보를 생산하고 참여, 개방, 공유하는 것을 웹 2.0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학술저작물도 웹(web)에 공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공개에 흐름은 오픈데이터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오픈엑세스(Open Access)는 학술적인 연구성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학술정보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⁶⁾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어디서든지 각종 학술저작물들을 출판과 동시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운동이다.⁷⁾ 따라서 이를 통하여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학술저작물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⁸⁾ 법적인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저작권, 이용허락(라이선스)에 의한 이용권한, 공정이용 등이 문제된다.

3) 이른바 데이터 주도 경제(date-driven economy)를 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위의 책 참조.

4) 위의 책, 4쪽.

5) 위의 책.

6)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 웹진, “오픈엑세스와 공공저작물의 공유”, 23호, 2016, <http://kmmmedlib.tistory.com/177> (최근 접속일: 2017. 11. 8).

7) OAK Portal, “Open Access(오픈엑세스)란?”, <http://www.oak.go.kr/about/aboutOak.do?menuSeq=80> (최근 접속일: 2017. 11. 8).

8)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 웹진, 위의 글.

오픈엑세스 출판은 원본데이터, 메타데이터, 소스 자료, 그림의 디지털 표현, 그래픽 자료, 멀티미디어 양식의 학술자료와 같은 오리지널 학술적인 연구성과물을 포함해야 한다.⁹⁾ 오픈엑세스의 유형으로는 크게 그린 오픈엑세스와 골드 오픈엑세스로 나뉜다. 학술 저작물에 대한 오픈엑세스에 동참하는 기관들은 자신들이 출판한 학술저작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기관 안에서 학술저작물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곤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학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른바 오픈엑세스 셀프 아카이빙(open access self-archiving)이다. 이처럼 그린 오픈엑세스는 저작자가 학술저작물을 오픈 저장고(repository)에 셀프 아카이빙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¹⁰⁾ 이와 달리 골드 오픈엑세스는 저작자가 오픈엑세스 학술지(전문 오픈엑세스 학술지 또는 하이브리드 학술지)에서 학술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도록 논문출판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 APC)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¹¹⁾

학술정보의 공유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학문적인 선진국과 달리 기금의 지원을 받아 생성된 학술저작물에 대한 오픈엑세스 정책이 대외적으로 크게 들어나 있지 않다. 2008년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5개 상용 원문DB의 등재지 서비스 현황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157종의 약 69%인 793종이 제공되고 있었고, 인문·사회·예술 분야 학술지가 자연·공학 분야 학술지보다 상용 원문DB를 통한 원문서비스 비율이 더 높았다.¹²⁾ 793종의 학술지 중에서 발행호수가 제공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 754종 학술지의 총 논문 수는 37,938개였으며, 이 중에서 학술저작물에 예를 들어 ‘이 논문은 OOO의 기금으로 작성된 논문임’ 등의 문구가 있는 기금논문은 13,589개로 조사된 논문의 35.8%를 차지하고 있었다.¹³⁾ 주제별로는 공학·자연·농수해 분야가 사회·복합학·인문 분야보다 기금논문의 비율이 높았다.¹⁴⁾ 이처럼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의 상업적

9) Sosnitza, Google Book Search, Creative Commons und Open Access, RW 2010, 225 (235).

10) 남영준 외 3인, 글로벌 오픈엑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6, 44쪽.

11) 위의 연구보고서.

12) 정경희, “공공기금으로 작성된 논문의 오픈엑세스 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 210쪽.

13) 위의 논문.

14) 위의 논문, 210~211쪽.

원문서비스 비율이 공학·자연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기금논문의 비율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¹⁵⁾

(2) 오픈액세스 확산의 필요

정보·공유경제사회에서는 고품질의 공유저작물의 이용을 통하여 비용절감, 부가가치 창출 등을 추구하고자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공공정보와 학술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높아져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고품질의 지식정보 공유사회·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공유마당, 공공누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저작물이라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일반사용자가 저작권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콘텐츠들 중에는 공적인 목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어 산출된 고품질의 학술적인 지식정보 또는 학술저작물들이 있다.

학술저작물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의자원에 속한다.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개발의 기초자원이므로써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부문의 학술저작물이 다양하게 활용되곤 한다. 학술저작물 중에서도 특히 학술논문의 경우, 해외에서는 유명 출판사의 학술지에 게재되어 출간되고 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관련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어 출간되고 유통된다. 해외에서는 특히 전통적으로 학술저작물은 종이로든 디지털 형태로든 영리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에 의해 간행된다. 그래서 해외 유명 출판사의 학술지는 통상적으로 유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이 무료로 배포되기도 하고 유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우리나라 학회지의 출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자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학술논문의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¹⁶⁾를 통하여

15) 위의 논문, 211쪽.

16)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20호).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¹⁷⁾ 그러나 이처럼 오늘날 주요 학술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화된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상승이 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물 및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정리·보관·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최근 자료구입비의 감소와 학술저작물 및 관련 DB 이용료의 상승 등으로 자료 확보 및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의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데이터베이스권 때문에 많은 연구나 시험 진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⁸⁾

국가는 국립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서관의 본질적인 부분인 출판물을 구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점과 경쟁보다는 공유와 협동의 패러다임이 여러 사회·경제영역에서 주요한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 시대에 발맞추어 공적 재원의 지원에 의해 생성된 학술저작물뿐만 아니라, 사적 학술저작물이 공유저작물로서 그의 자유이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오픈엑세스라는 사회적 운동에 힘을 보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제적인 뒷받침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공적인 목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산출된 학술저작물은 납세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성과의 확산 및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의 법적 근거로는 학술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학술저작물 자유이용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여 고품질의 학술저작물을 개방하는 것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17)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재단 등재지 기준으로 약 67%의 학술지가 발행기관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무료로 접근하여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시 이 중에서 약 40%의 학술지가 상용데이터베이스에서 유료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김규환·정경희,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특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34권 제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7, 264쪽.

18) 김병일, “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논의”, 계간 저작권 봄호, 2015, 23쪽.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를 통하여 학술정보 중에서도 특히 학술저작물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오픈엑세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공중(公衆)¹⁹⁾의 정보접근성 향상, 정보격차의 해소,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술저작물과 같은 고품질의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하여 이용자의 지적 만족도와 생산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적어도 공공기금의 지원에 의하여 생성된 학술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유를 법제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학술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및 독일의 현황과 법·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오픈엑세스 확산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또는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 있다. 도서관의 오픈엑세스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 관계자, 법학 교수, 문헌정보학 관련 교수, 한국문화정보원 관계자와 함께 전문가회의도 가졌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오픈엑세스 현황과 과제,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수정 등이 논의되었다.

19) 저작권법상 여러 곳에서 ‘공중’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나, 예를 들어 ‘일반인’이라는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은 연구성과물의 오픈엑세스에 대하여 제안된 학술·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공중을 ‘국민’으로 표기하고 있다. 강선준·원유형,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법학논문집 제40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552쪽.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이 연구는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과제 수요조사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제안한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제도 연구”를 동인으로 하여 진행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과제 제안에서는 국내 오픈액세스 현황, 국내외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의 조사 및 분석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시적으로는 공공기금에 의해 생성된 학술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공유를 강조하고 오픈액세스 의무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안하고 주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유럽연합·독일의 오픈액세스 관련 현황과 법제를 파악한 후 연구자 개인의 자유로운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연구주제 제안기관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내용 및 체계상 주제가 산만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기록관리학 등에 대한 학제적 이해와 연구를 통하여 충실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대상은 특히 사적인 학술저작물과 공적 재원의 지원에 의하여 생성된 개인의 학술저작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제2장

● 우리나라의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 I.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II. 오픈액세스 관련 제도

제2장

우리나라의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우리나라에서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제로는 우선 저작권법이 있다. 공공기금의 지원에 의하여 생성된 학술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 볼 수 있어서 공공데이터법과 함께 저작권법이 연관된다.

I.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5조 제1항). 이렇게 기증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에서 기증저작물로 안내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타인의 저작물이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8조). 이러한 점에서 타인의 저작권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저작권법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공공저작물의 개념정의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같은 지침 제2조 2호). 다만, 이 지침에서 말하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귀속의 주체인 공공기관의 개념이 저작권법상 공공기관과 차이가 있다. 저작권법은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별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지침은 이들 모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²⁰⁾ 즉, 지침이 상위법인 저작권법보다 공공기관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20) 김형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5, 39쪽.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 법률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 등록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같은 항 1~4호). 다만, 등록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공저작물이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중앙관서의 장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또한 이러한 공공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될 수 있다(같은 항).

II. 오픈액세스 관련 제도

1. Open Access Korea(OAK)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도서관은 OAK사업을 통하여 오픈액세스 개념을 실체화하면서 국내 학술저작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1월 16일 현재 OAK에서 37개 기관(연구소 14곳, 대학 13곳, 공공기관 6곳, 의학도서관 4 곳)의 저장고에서 수집한 오픈액세스 콘텐츠는 624,249건이라고 밝히고 있다.²¹⁾ 자료 유형별로는 학위논문, 학술논문, 보고서, 단행본, 특허, 기타 기관 생산물 등이다.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OAK Central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

21) OAK Portal, “보유현황”, <http://www.oak.go.kr/main/main.do> (최근 접속일: 2017. 11. 16).

[그림 2-1] 학술지 오픈엑세스 저작권 정책 수준²²⁾

무료접근정책	재사용정책	저작권 정책	셀프 아카이빙 정책
오픈이고 없음	저작자 표시 자유로운 이용 가능 (CC-BY)	저자가 모든 저작권 보유	심사 전후 논문 어디에도 아카이빙 가능
오픈이고 6개월 이하	저작자 표시-비영리(CC-BY-NC)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CC-BY-NC-SA)	저자가 저작권 보유 (단, 몇 가지 제한사항 있음) 공동 소유	심사 후 논문 어디에도 아카이빙 가능
오픈이고 6개월 이상	저작자 표시-변경금지(CC-BY-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BY-NC-ND)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보유 (단, 저자와 이용자에게 몇 가지 권리 허락)	심사 후 논문 특정 장소 아카이빙 가능
-----	-----	-----	심사 전 논문 특정 장소 아카이빙 가능
구독 회원가입 등	법률상 저작권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보유	아카이빙 불가

2.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우리나라에서 정책상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여 기증된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표시 (Creative Commons License: CCL)된 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유이용 허락표시(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된 저작물을 말한다.²³⁾ 넓은 의미에서 공공저작물도 공유저작물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권리처리된 공유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을 운

22) 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http://copyright.oak.go.kr/main.do> (최근 접속일: 2017. 11. 21).

23) 공유마당, “공유마당 안내”,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090> (최근 접속일: 2017. 10. 11).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과 기증 저작물을 넓은 의미에서 공공저작물로 보는 입장에 김형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2015), 74쪽 비교.

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유저작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create), 만든 저작물을 나누고(share), 이를 새로운 창작을 위해 다시 쓰는(remake) 끝없는 순환 공간²⁴⁾임이 강조되고 있다. 공유마당에서는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CCL)가 쓰이고 있다. 즉,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²⁵⁾ CCL의 일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6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이른바 공유저작권은 공유경제를 저작권 측면에서 시현하고자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²⁶⁾

[그림 2-2] CCL의 조건²⁷⁾

 <p>CC BY</p> <p>Attribution (저작자 표시)</p> <p>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건입니다.</p>	 <p>CC BY-NC</p> <p>저작자 표시-비영리</p> <p>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p>	 <p>CC BY-ND</p> <p>저작자 표시-변경금지</p> <p>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p>
 <p>CC BY-SA</p> <p>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p> <p>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p>	 <p>CC BY-NC-SA</p> <p>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p> <p>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p>	 <p>CC BY-NC-ND</p> <p>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p> <p>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p>

24) 공유마당, “공유마당 안내”,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090> (최근 접속일: 2017. 10. 11).

25) 공유마당,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CCL) 저작물이란?”,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093> (최근 접속일: 2017. 10. 11).

26) 민지애·전승규, “공유 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6 No. 7, 한국콘텐츠학회, 2016, 534쪽.

27) 공유마당,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CCL) 저작물이란?”,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093> (최근 접속일: 2017. 10. 11).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허락표시제도(KOGL)이다. 출처표시의무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의무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CL과 비견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조건을 상정하고 있다.

[그림 2-3] 공공누리 적용 간편한 소스 코드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p>공공누리 유형선택</p>  <p>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적용</p>	<input type="radio"/>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input type="radio"/>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input type="radio"/>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input type="radio"/>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input type="radio"/>		적용안함 (저작권법 제24조의21항 1호~4호의 경우) ▶ 상세내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1유형인 출처표시만을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에 이용자는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함께 변형을 통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공동저작 또는 민간저작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1유형이 적용된다.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제3자가 보유하고 있으나, 저작물의 변경 또는 상업적 이용제공 등 1유형의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출처표시만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3자에게 있거나, 초상권자로부터 제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누리 적용 허락을 받아 2~4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 2유형에서 공공저작물 활용 시 비상업적 이용과 함께 변형을 통한 2차 저작물을 작성

할 수 있다. 3유형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형을 통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다. 4유형에서는 공공저작물의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되며, 변형을 통한 2차 저작물을 생성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방법을 준용한다.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도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법률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1~4호).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다만, 공공저작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누리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3장

유럽연합과 독일의 학술저작물

●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 I. 유럽연합에서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 II. 독일에서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 III. 시사점

제3장

유럽연합과 독일의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유럽연합과 독일에서는 오픈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연구성과물과 학술저작물을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오픈사이언스를 글로벌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I. 유럽연합에서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1. 저작권법제 개혁 지침(안)

유럽연합에서 현재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체계는 2001년 저작권 지침의 채택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⁸⁾ 하지만 이 지침은 20세기 버전의 인터넷 즉, 브로드밴드와 플랫폼이 없는 인터넷과 검색엔진, 스트리밍과 P2P 파일공유가 없었던 인터넷 기반에 기초한 것이다.²⁹⁾

2015년 5월 6일 유럽위원회는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³⁰⁾을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³¹⁾

28) 김병일, “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논의”, 계간 저작권 보호, 2015, 21쪽.

29) 위의 논문.

30) 정식 명칭은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COM(2015) 192 final”이다.

31) 장예영,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과 저작권법제 - 2016년 9월 14일의 DSM저작권지령안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제86호, 세창출판사, 2017, 103쪽 비교.

- 유럽 전 지역을 망라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접근성 향상
 - 소비자와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 원칙
 - 적정 가격에 제공되는 고품질의 해외 배달서비스
 - 콘텐츠에 액세스 제한이 있는 부당한 지역별 접근 차단(geo-blocking) 방지
 - 디지털콘텐츠에 보다 나은 액세스를 위한 현대적이고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
 - 해외 판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담과 장애 완화

- 디지털네트워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리 환경 구축
 - 목적에 맞는 통신 원칙
 - 21세기 미디어 체계
 - 플랫폼과 매개자를 위한 규제 환경
 - 디지털서비스와 개인 데이터 취급에 관한 신뢰와 보안 강화

- 유럽 디지털경제의 성장 가능성 최대화
 - 데이터경제 구축
 - 상호 호완성과 표준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
 - 포괄적인 전자사회

이후 2016년 9월 14일에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³²⁾을 공표하였다. 이후 2017년 6월 8일 유럽의회 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Committee on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IMCO)는 이 지침(안)을 승인하였다. 무엇보다도 유럽위원회는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을 저작권에서 배제하려고 하며(지침(안) 제3조), 디지털 수업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을 추진하려고 한다(같은 안 제4조). 이에 따라 저작권상 보호되는 대상의 모든 복제와 학문

32) 정식 명칭은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6/0593 final”이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같은 안 제3조 제1항). 다만, 이러한 마이닝 예외는 출처표시 의무에 대하여 포기하고 있다.³³⁾ 정보공개 측면에서 권리소지자에게 협상에 의하여 예외에서 면제된 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같은 안 제3조 제2항). 권리소지자에게는 규칙과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보완과 통합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유효한 실행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³⁴⁾

2. 오픈엑세스 관련 정책

유럽의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총 데이터의 15~25%는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³⁵⁾ 유럽연합은 공공재, 신뢰할 만한 연구혁신, 유럽의 연구 구심력 회복 등과 접목하면서 오픈엑세스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오픈데이터, 오픈사이언스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픈엑세스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골드 오픈엑세스 정책이 뚜렷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술지 출판시장에서는 전문 오픈엑세스 학술지뿐만 아니라, 구독 학술지의 일부 논문에 오픈엑세스 옵션을 부여한 하이브리드형 학술지가 증가하고 있다.³⁶⁾ 반면에 논문출판비용이 지급된 학술논문에 대하여 학술지 구독기관이 구독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더블 디핑(double dipping)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³⁷⁾ 그리하여 구독료에서 논문출판비용을 상계하는 새로운 구독 계약방식이 체결되고 있다.³⁸⁾

33) Raue, Das Urheberrecht der digitalen Wissen(schaft)sgesellschaft, GRUR 2017, 11 (13).

34) *Ibid.*

35) 홍재현,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 2쪽.

36) 남영준 외 3인, 위의 연구보고서(2016), 26, 77~78쪽.

37) 위의 연구보고서, 79쪽.

38) 위의 연구보고서, 26, 130쪽.

유럽위원회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유럽연합의 기본프로그램으로 ‘Horizon 2020’에서 과학을 육성하고 지시기반 경제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적 재원의 지원에 의하여 생성된 연구성과물과 연구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조항을 발표하였다.³⁹⁾ Horizon 2020에서는 그런 오픈엑세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⁴⁰⁾

다른 한편, 유럽대학협회(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EUA) 이사회에서도 유럽의 대학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오픈엑세스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출판물에 대한 오픈엑세스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학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⁴¹⁾ 이러한 오픈엑세스 로드맵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⁴²⁾

- 이해관계자 사이의 구조화된 대화 촉진
- 유럽 대학으로 하여금 오픈엑세스 정책, 인프라, 이니셔티브 채택 촉진 및 지원
- 첨단 과학 인식 및 연구평가시스템의 개발과 설립 장려
- 다양한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정책 언급
- 대체 및 지속가능한 오픈엑세스 비즈니스모델 고려
-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포함한 연구출판물 및 데이터의 액세스, 사용과 공유 촉진
- 연구출판물 및 교재에 관한 기관 오픈엑세스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표준의 수립을 장려 · 지원하고 최종 모니터링

39) 위의 연구보고서, 37쪽.

40) 위의 연구보고서.

41) 위의 연구보고서, 38쪽.

42) EUA, “EUA Roadmap on Open Access to Research Publications”, 4. Feb. 2016, <http://www.eua.be/activities-services/news/newsitem/2016/02/04/just-released-eua-roadmap-on-open-access-to-research-publications> (최근 접속일: 2017. 11. 15).

II. 독일에서 오픈엑세스 관련 법·제도

1. 저작권법상 오픈엑세스 진흥

독일의 입법자는 저작권법상 여러 곳에서 오픈엑세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형적인 형태로 공개 재현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무형적인 형태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공개적인 재현권은 강연권, 공연권, 상영권, 오픈엑세스권(공중접근권), 방송권, 영상매체 또는 음반을 통한 재현권, 방송물 및 공중 접근의 재현권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1~5호). 무형적인 재현권으로 활용권(Verwertungsrecht)상 분류할 때에는 연구육구는 공개 개념과 관련하여 규명되어야 한다.⁴³⁾ 그리고 오픈엑세스권은 저작권법 제15조 제3항의 공개 개념과 관련하고 있다. 즉, 재현(Wiedergabe)이 일반인들 중 다수를 위하여 의도된 것이라면 공개(오픈)인 것이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1문). 아울러 명시적으로 일반인은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오픈엑세스권을 가진다(같은 법 제19a조). 이때 다른 한편으로 공개 개념의 전통적인 이해는 아직도 시대에 적합한지, 또는 무형의 활용을 함에 있어 사적·공적 이용의 경계는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된다.⁴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서는 필수적인 서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같은 법 제31a조 제1항 2문). 다만, 이때 저작물의 이용자는 오픈엑세스가 문제되는지와 알 수 없는 이용 유형의 대상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⁴⁵⁾

오픈엑세스 부문에서 로열티나 이용료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통상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저작자는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

43) Koof, Senderecht und 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 im Zeitalter der Konvergenz der Medien (2015), S. 6.

44) *Ibid.*, S. 7.

45) Wiebe in Spindler/Schuster, Recht der elektronischen Medien (2015), UrhG § 31a Rn. 9.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저작권법 제32조)을 회피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⁴⁶⁾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린 모든 게시물이 동시에 오픈엑세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가 실제로 포괄적인 이용권을 무상으로 설정하려고 한 것인지 항상 검토해야 한다.⁴⁷⁾

저작자가 타인에게 조건을 정하여 이용권을 설정하였고, 합의된 반대급부가 저작자와 타인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에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수익과 이득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상태에 있다면, 타인은 저작자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절히 관여할 수 있도록 저작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변경에 사전동의할 의무가 있다(저작권법 제32a 조 제1항 1문). 이에 대한 예외로 저작자는 권리의 사전포기로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함이 없이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문). 이러한 예외로 인하여 오픈엑세스 이용허락 시 법적 불확실성은 방지되어야 한다.⁴⁸⁾

이른바 승계적 보호⁴⁹⁾는 오픈엑세스 이용허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후에 저작자가 배타적인 권리의 설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⁵⁰⁾

특히 저작권법 제38조 제4항은 잡지에 학술출판을 위하여 2013년 10월 1일에 새롭게 도입된 필수적인 2차 공표권의 저작자계약법상 규정이다.⁵¹⁾ 이 규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6) *Ibid.*, UrhG § 32 Rn. 15.

47) *Ibid.*

48) *Ibid.*, UrhG § 32a Rn. 16.

49) 이는 라이선시가 종전에 획득한 라이선스의 효력을 새로운 권리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지영,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계간 저작권* 2013 가을호, 17쪽. 따라서 통상라이선시는 자신의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 저촉되는 배타적 라이선스가 추후에 체결될 경우에 이러한 배타적 라이선시에 대하여 자기의 적극적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위의 논문, 15쪽. 이 점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다른 점이다, 위의 논문, 15쪽, 주) 29.

50) *Ibid.*, UrhG § 33 Rn. 8.

51) Pflüger, Open Access-Regulier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 Regulierungsansätze im digitalen Zeitalter für den Bereich von Wissenschaftspublikationen in Zeitschriften, in: Dreier · Fischer · van Raay · Spiecker gen. Döhmman *et al.*, Informationen der öffentlichen Hand - Zugang und Nutzung, Nomos, 2016, S. 547.

- 적어도 1년에 2회 발행되는 편집물에 학술적 기고문이 문제됨
- 기고문은 적어도 절반 이상 공적 재원을 지원받은 연구활동에서 생성되어야 함
- 원본출판의 원고판 만 출처를 명시한 최초 발간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저작자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오픈엑세스 될 수 있음
- 2차 공표에 대한 권리는 계약상 절충의 여지가 없음

여기에서 저작자에게 적절한 2차 공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 저작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는 없다.⁵²⁾ 그래서 필수적인 저작자의 2차 공표권은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에서 우선적이고, 그린 오픈엑세스인지 골드 오픈엑세스인지 선택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⁵³⁾ 다만, 이 규정은 대립적인 계약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한 1년의 경과 후 학자들의 기고문을 대학과 연구기관의 저장고 등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오픈엑세스를 위한 법적인 기본조건의 개선을 담고 있다.⁵⁴⁾ 이와 달리 훨씬 더 광범위하지만 학문에 국한되지 않은 CC-BY 라이선스 유형은 전적으로 골드 오픈엑세스를 추구하고 있고, 권리보호보다는 지식이전에 대한 저작권을 새롭게 맞추는 것을 촉진하고자 한다.⁵⁵⁾

제38조(편집물예의 기고문)

- (4) 적어도 절반 이상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은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생성되고,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편집물을 통해 발행된 학술적 기고문에 있어 그 저작자가 출판인 또는 편집자에게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어떠한 상업적 목적에도 기여하지 않는 한 저작자는 처음 발간된 때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 기고문을 채택된 원고판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접근시킬 권리를 가진다. 최초 발간의 출처가 표시되어야 한다. 저작자에게 불이익한 다른 약정은 효력이 없다.

52) Fehling, Von der kommerziellen Verlagsproduktion zum Open Access - Roll des Rechts beim Wandel wissenschaftlicher Publikationskanäle, in: Hoffmann-Riem *et al.*, Innovationen im Recht, Nomos, 2016, S. 343.

53) *Ibid.*, S. 348.

54) Pflüger, *op. cit.*, S. 547.

55) Fehling, *op. cit.*, S. 348.

2. 저작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2017년 1월 13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MJV)는 지식사회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저작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⁵⁶⁾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2017년 9월 7일 연방관보에서 공포되었고, 오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⁵⁷⁾ 이 법의 목적은 다양한 사용자를 위하여 발견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학문을 위한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용허락을 규제하는 규정을 재구성, 통합, 단순화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및 학문 분야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유럽연합 법제에 따른 허용한도를 적절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권리보유자 특히, 학술저작자와 전문출판사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허용된 이용은 통상적으로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출판사도 향후 적절한 보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과 학문을 위하여 법률상 허락된 이용의 다양성에 대하여 산재해 있는 일시적 복제행위(저작권법 제44a조 이하)에 관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의 시스템적인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⁵⁸⁾ 유럽연합 법제상 허용되는 한, 동시에 이 법안은 특히 교육과 학문을 위한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잠재성을 보다 더 열어주기 위하여 허락의 구성요건을 확대하고 있다. 그 밖의 저작물의 범주에 대한 이용의 구성요건도 확대된다.

저작권법 개정안 중에서 제60a조부터 제60h조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수업과 교육(제60a조), 수업미디어와 교육미디어(제60b조), 학술연구(제60c조), 텍스트마이닝과 데이터마이닝(제60d조), 도서관 및 아카이브 같은 기관(제60e조, 제60f조)에 관한 규

56) 정식 명칭은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gleichung des Urheberrechts an die aktuellen Erfordernisse der Wissensgesellschaft”이다.

57) BGBl Jg 2017 Teil I Nr. 61, S. 3346.

58) Sandberger, Die Zukunft wissenschaftlichen Publizierens Open Access und Wissenschaftsschranke, OdW 2017, 75 (92).

정을 포함하고 있다. 각 규정들은 앞으로 법률상 허락된 이용의 방식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담은 개별적인 구성요건을 갖추게 된다. 동시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이를 위한 규정들(학교방송물(제47조), 수업 및 연구를 위한 오픈엑세스(제52a조), 공공도서관, 박물관과 기록보존고의 전자적 열람석에서 저작물의 재현(제52b조), 주문에 따른 사본의 송부(제53a조))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예를 들어 교회, 학교 또는 수업에서 이용을 위한 편집물(제46조), 제53조에 따른 사적 복제의 제한)으로 제외된다.⁵⁹⁾ 이하에서는 각 조문별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⁶⁰⁾

- 수업 및 교육미디어(제60b조) : 교과서와 같은 수업 및 교육미디어의 제작자를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과 같은 여러 가지 형식규정은 배제됨
- 학술연구(제60c조) : 현행 저작권법 제52a조와 비교하여 사본의 제작, 그의 배포, 비상업적 학술연구를 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한 개별적인 허락이 열거됨. 이때 저작물의 25%까지 원칙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몇몇 사례의 경우에는 그 외의 이용이 허용됨
-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제60d조) : 법안은 처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텍스트, 데이터, 사진, 그밖에 자료가 분석되는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규정함. 특히, 저작권법상 관련 있는 방식으로 복제권을 다루는 한, 이러한 방법에 의한 복제와 학술표준 준수의 사후적인 검토를 위한 분석된 자료의 보관이 허용됨
- 도서관(제60e조) : 도서관을 위해서 포괄적인 허락이 마련됨. 예를 들어 사본을 제작하고 복구와 관련하여 이를 유포 및 대여하는 것이 허용됨. 예술저작물의 전시정보와 소장목록문서는 공유할 수 있음. 단말기에 있는 도서관 소장물 이용에 관한 이 규정은 허용된 연결복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사본 송부가 출판

59) *Ibid.*, 93; Referenten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gleichung des Urheberrechts an die aktuellen Erfordernisse der Wissensgesellschaft, S. 18,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RefE_UrhWissG.pdf?__blob=publicationFile&v=1 (최근 접속일: 2017. 11. 23) 비교.

60) Sandberger, *OdW* 2017, 75 (93).

조건의 우선함이 없이 기술중립적으로 개선됨. 지금까지 도서관의 필수적인 검색이 제외됨

- 아카이브, 박물관, 교육시설(제60f조) : 문화유산과 지식의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의미 있는 그밖에 시설 즉, 비상업적인 아카이브와 비상업적인 오픈엑세스 박물관과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도서관과 같이 동등한 이용이 허용됨. 다만, 사본 송부는 도서관에 유보됨. 이른바 허락의 구성요건은 계약상 합의에 의한 처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와 지식재산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강행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형성됨⁶¹⁾

법정 제한 영역에서 이용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저작권자는 개정안 제60h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받으며, 유럽연합 법제가 보상을 강행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이다.⁶²⁾ 현행 제54a조와의 차이에서 보상의 총괄 확정은 상당한 보상을 산정하기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관한 무작위 샘플을 기반으로 충분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입법자는 단일항목을 기반으로 결산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행 비용규정의 실제를 조사한다.⁶³⁾

3. 오픈엑세스 관련 정책

창조적 자산공유(creative commons)와 과학자산공유(science commons)와 대등하게 독일에서도 오픈엑세스 운동이 전개되었다. 디지털경제, 데이터 기반 사회를 구축해 나가면서 공적 재원에 의해 생성된 연구성과물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를 공개·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61) Referentenentwurf des BMJV,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gleichung des Urheberrechts an die aktuellen Erfordernisse der Wissensgesellschaft, S. 20.

62) Sandberger, OdW 2017, 75 (93~94).

63) Sandberger, OdW 2017, 75 (94); Referentenentwurf des BMJV,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gleichung des Urheberrechts an die aktuellen Erfordernisse der Wissensgesellschaft, S. 20 비교.

(1) 2003 베를린 선언

2003년 10월 학문적인 지식의 오픈엑세스에 관한 베를린 선언은 2002년 부다페스트 오픈엑세스 선언과 2003년 오픈엑세스에 관한 베데스타 선언을 계승하여 독일연구재단, 막스 플랑크 재단, 프라운호퍼 재단, 헬름홀쯔 재단, 대학총장 컨퍼런스의 주도로 발표되었다.⁶⁴⁾ 이는 인터넷이 문화유산을 비롯한 인간지식을 전 세계적 쌍방향적으로 전파하게 해주는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터넷을 통한 오픈엑세스에 관하여 연구정책입안자, 연구후원기관, 연구기관,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는 선언이다.⁶⁵⁾ 또한 저자와 권리보유자가 모든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복사, 이용, 배포, 전송,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신뢰할 만한 목적의 경우 출처를 표시한다는 조건으로 디지털매체를 통한 2차 저작물의 배포가 가능하도록 전 세계적인 접근권과 이용허락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⁶⁶⁾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최종본과 추가 자료들을 표준 포맷에 맞추어 오픈엑세스 저장고에 기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⁶⁷⁾

2003년 베를린 오픈엑세스 선언을 계기로 주요 기관들이 오픈엑세스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연구재단(DFG)은 2006년부터 공적 재원으로 생성된 연구성과물이 오픈엑세스 형태로 공개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⁶⁸⁾ 주요연구기관 연맹(Allianz der Wissenschaftsorganisationen)은 2008년 ‘Digital Information’ 세부계획을 채택하고 공공연구성과물과 연구데이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자는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일연구재단을 포함한 관련 단체는 2010년 ‘연구데이터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⁶⁹⁾

64) Sosnitzer, RW 2010, 225 (234).

65) 남영준 외 3인, 글로벌 오픈엑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2016), 41쪽.

66) 위의 연구보고서.

67) 위의 연구보고서.

68) 신은정·정원교, “오픈사이언스정책의 확산과 시사점”, STEPI Insight Vol. 2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17쪽.

69) 위의 글, 18쪽.

(2) 연방교육·연구부의 오픈액세스 정책

연방교육·연구부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독일 학문은 오픈액세스를 촉진하고 견고히 하는 것에 있다. 오픈액세스 전략의 지도원리는 다음과 같다.⁷⁰⁾

- 학술출판의 표준으로써 오픈액세스를 구축함
 - 오픈액세스는 독일에서 학술출판의 표준이 됨. 오픈액세스의 수용은 학문으로부터 도출됨
- 오픈액세스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설함
 - 그린 오픈액세스와 골드 오픈액세스는 보완적이고 동등함. 그밖에 기준도 가능함
- 학문적인 지식에 참여를 강화함
 - 공적 재원으로 연구된 출판물은 오픈액세스되어야 함. 학문과 연구는 본질적으로 국가재원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음. 사회와 경제는 공적 재원이 제공된 학문과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고품질의 학술출판을 보장함
 - 오픈액세스 출판은 전통적인 출판과 같이 품질보증에 견줄 수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학술지 논문 상호심사(peer-review)에서 평가절차와 같이 입증된 품질보증 체계로 이를 보장할 수 있음. 오픈 상호심사절차와 같이 새롭고 혁신적인 품질보증모델을 이용할 수 있음
-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음
 - 오픈액세스는 출판 또는 연구성과물의 포기를 위한 의무가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음. 출판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학자의 일반적인 책임에 있음. 당장 출판이 고려되

70)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Open Access in Deutschland: Die Strategie de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6, S. 7, https://www.bmbf.de/pub/Open_Access_in_Deutschland.pdf (최근 접속일: 2017. 11. 23).

는 곳에 오픈엑세스가 미칩. 특히화로 성과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판단은 영향을 받지 않음

독일과 유럽의 대다수 학자들은 오픈엑세스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실제적인 수용은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종종 부분적으로 오픈엑세스 모델로 자신들의 연구성과물을 발간한다. 보다 더 오픈엑세스 출판으로 향하고자 하는 학문의 욕구와 현실적인 출판실무 사이의 격차는 극복되어야 한다. 오픈엑세스가 출판표준인 학문시스템으로의 이전은 학문시스템에 있는 많은 관여자들의 책임이다. 이는 학자, 대학, 연구기관, 정치, 경제, 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때 정치는 연구후원자로서 입법자로서 또한 격려자와 서로 다른 이해상황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연방교육·연구부는 학문시스템에서 기존에 좋은 사항과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일정한 조치로 오픈엑세스의 구축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엑세스 전략을 위한 다음의 다섯 가지 행동영역이 정해져 있다.

- 오픈엑세스 정착을 기본원칙으로 홍보
- 가시성과 수용성
- 실무로부터 성공적인 모델의 역량 개발과 확산
- 재정적인 지원
- 투명성과 모니터링

행동영역은 학술출판업계의 다양한 관점에서 시작된다. 공통적인 점은 역할 모델, 인센티브, 새로운 의사소통 공간, 실제적인 지원에 관한 것이다.

(3) 주 정부 차원의 정책

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특히 교육은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오픈엑세스에 대한 독일의 지원시스템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관할은 주 정부에 속한다. 이미 개별 주의 고등교육법에서는 오픈엑세스의 정착

을 위하여 대학의 명시적인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센터가 2차 공표를 위한 저장고를 유지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편성할 의무도 마찬가지이다.⁷¹⁾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고등교육법(Landeshochschulgesetz)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주 대학은 2차 공표에 적합한 저장고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⁷²⁾ 같은 법 제44조 제6조에서는 대학에서 학자들에 대한 오픈엑세스의 직무법상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적 재원이 지원된 연구의 결과물인 학술출판물은 다시금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⁷³⁾ 또한 주에 있는 대학들이 저작권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학술기고문의 비상업적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관으로 대학교수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⁷⁴⁾ 이러한 저작물은 직무상 생성되고 최소한 1년에 2회 주기적으로 간행되는 편집물에서 산출된다.⁷⁵⁾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심지어 출판물의 형식과 양식을 결정할 수도 있어서 기본법(Grundgesetz) 제5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되는 학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⁷⁶⁾ 정치권에서는 2차 저작물 관련 의무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오픈엑세스 전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 차원에서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지원할 수 있는지 논의되고 있다.⁷⁷⁾ 이것은 보다 더 오픈엑세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 차원에서 지원하는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온라인 학술지를 개발하고 출판하면서 연구결과를 스스로 출판할 권리가 있음을 일깨우게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2차 저작물 권리에 대한 인식을 초월한 것이다.⁷⁸⁾

71) Pflüger, *op. cit.*, S. 550.

72) *Ibid.*

73) *Ibid.*

74) Löwisch, Förderung statt Zwang - Neue Open Access Strategie in Baden-Württemberg, OdW 2017, 59.

75) *Ibid.*

76) Götting · Lauber-Rönsberg, Open Access und Urheberrecht, OdW 2015, 137 (145).

77) Löwisch, OdW 2017, 59.

78) *Ibid.*

Ⅲ. 시사점

경제적으로 오픈엑세스와 출판사에 의한 발행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그런 오픈엑세스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저작자는 출판계약에서 출판사에게 인터넷에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표를 위한 배타적인 이용권을 설정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자를 그밖에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서 배제한다. 오픈엑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오픈엑세스가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통적인 출판시스템에 비하여 공공기관에게 잠재적으로 고비용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에서는 공적 재원에 의하여 생성된 학술저작물뿐만 아니라, 일반 학술저작물과 연구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오픈엑세스가 활성화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오픈엑세스 정책에 따라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공적 재원에 의하여 생성된 연구성과물을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데이터이코노미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정식으로 구입한 온라인콘텐츠를 유럽연합 단일시장 안에서 국경을 넘어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침에 관해서도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⁷⁹⁾ 민간차원에서도 주요 연구단체들이 오픈엑세스 온라인 학술지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 입법자들의 판단은 강행적인 저작권법상 규정을 통하여 오픈엑세스 출판모델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입법적인 동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⁸⁰⁾

79) 장예영,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과 저작권법제 - 2016년 9월 14일의 DSM저작권지령안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제86호(2017), 123쪽.

80) Götting · Lauber-Rönsberg, OdW 2015, 137 (144).

[표 3-1]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오픈엑세스 비교⁸¹⁾

구 분	유럽연합	독 일
그린/골드 오픈엑세스	그린 / 골드	그린
법 제	○ (지침)	○
진흥 조건	○	○
엠바고 기간(개월)	6/12	12
재이용	정보 없음	미해결

81) Pflüger, *op. cit.*, S. 560.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4장

정리 및 개선과제

I. 정 리

II. 개선과제

제4장

정리 및 개선과제

I. 정 리

학문은 대화와 개방적인 교류로 생명력을 갖는다. 오픈엑세스는 학문으로부터 도출된 아이디어이다. 오픈엑세스는 문화적 변화이다. 디지털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가능성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학술연구성과는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열쇠는 오픈엑세스에 있다. 이해당사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학술문헌과 그밖에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픈엑세스는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도 이익이며 윈-윈(win-win)할 수 있다. 새로운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엑세스를 통하여 이들은 혁신을 위해 학문적인 지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적 재원의 지원으로 생성된 성과물의 결과도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지금까지 공적 재원의 지원에 의하여 생성된 학술저작물의 오픈엑세스 출판은 오로지 자발적이다. 오픈엑세스를 완성하고자 할 때, 저작권법의 개혁과 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유형은 기술적 사회적 혁신요인들과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법제는 기술 혁신에 반응하고,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정보흐름에 의한 창의성과 같은 사회적 논의에 공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제는 이러한 점들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한 점들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이때 법제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결과를 극복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만의 역점을 두고 설정한다.

공공저작물에 대한 오픈엑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제(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저작권법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이유는 우선 공공저작물에 잔류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한적이지만 앞에서 유럽연합과 독일의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우리의 법·제도나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방향성 측면에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짚어 보고자 한다.

II. 개선과제

오픈엑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화를 고려할 때에는 우선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한 오픈엑세스 위임, 인적·물적 적용범위, 엠바고기간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픈엑세스 진흥을 위한 조건과 골드 또는 그린 오픈엑세스 방식 그밖에 가능한 방식을 열어두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술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활성화, 학술저작물의 범위, 학술저작물의 제출, 학술저작물의 활용, 학술저작물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법리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1. 이용허락과 그의 표준화 및 호환성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그 학술저작물의 저자이다. 학술저작물의 창작과 출판 목적이 이익추구에 있다면 저작권은 더욱 중요해진다. 대다수 비영리 학술저작물 발간기관에 의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통하여 상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의 소유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학술저작물의 다양한 이용이 제한된다.⁸²⁾

82) 정경희·김규환,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특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6, 284쪽.

학술저작물의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적 과제에 있어서 저작권의 이용허락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학술저작물을 공유하여 정보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저작권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용허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이용허락계약이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되고, 재이용 및 여러 저작물의 조합에 의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허락의 표준화와 호환성의 확보가 중요하다.⁸³⁾

학술저작물의 저작권이라는 특수성은 학술분야에서의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즉, 문헌인용을 비롯하여 저작권법과 연구자의 관습이 혼재해 있다. 학술저작물은 지적인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재산권으로서 저작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학술분야에서 저작권 개혁이라는 정책 논의는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다. 디지털아카이브를 촉진하는 것처럼 도서관 등의 가치를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는 저작권법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된다. 하지만 오픈액세스 시대에는 연구 성과를 이용하는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개인 및 단체이 이용자와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의 자각도 요구된다.

디지털시대에 학술저작물의 복제와 배포는 낮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동시에 매우 쉬워졌다. 이는 지식의 공유가능성을 넓히면서, 오픈액세스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용허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플랫폼, 오픈액세스 아카이브, 학술저작물의 발간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에서 디지털원문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저작재산권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양도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해야 한다.⁸⁴⁾

이용허락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공유저작물과 관련하여 CCL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표시(KOGL)가 있어서 이용자 혼란이나 제도적 충돌이 야기

83) 연구성과물의 이용 동의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이행과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계약서 표준조항(안) 마련을 언급한 것으로 강선준·원유형, 앞의 논문, 548-549쪽.

84) 이러한 측면에서 정경희·김규환, 앞의 논문, 285쪽.

될 수 있다. 이용허락에 의하여 형성되는 비용의 최소화에 대한 중요성은 대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해결책에 있어서는 통일적이지 않다. 오픈엑세스 콘텐츠의 상호이용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이용허락 정책 사이에서 제도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은 이용허락 본연의 자세에 대해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공공저작물의 공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으며, 자유이용에 대한 제한이 포괄적이어서 공공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저작물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이때 공적 재원의 지원으로 생성된 연구성과물 또는 학술저작물도 공공저작물에 포함된다. 그리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함께 일정한 요건 상 공공저작물의 의무적인 공개를 명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로소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모색할 수 있다.⁸⁵⁾

이러한 점은 앞에서 언급한 유사 법률 즉 공공데이터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공공기록물법, 정보공개법뿐만 아니라 국가정보화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등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후자의 법제들에서도 공적 재원의 지원으로 생성된 연구성과물의 공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⁸⁶⁾ 앞에서 살펴본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저작권법상 오픈엑세스 제도에 이어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은 연구성과물의 저작자에게 2차 공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⁸⁷⁾ 그리고 공적 재원에 의해 생성된 연구성과물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공개 및 오픈엑세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가 요구된다.

85) 학술·과학기술·정책연구 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학술·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참조, 우지숙 외 11인, 공공 연구성과물의 공중 접근정책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 207쪽 이하; 강선준·원유형, 앞의 논문, 552쪽 이하.

86) 남영준 외 3인, 앞의 연구보고서, 182쪽.

87) 같은 입장에 강선준·원유형, 앞의 논문, 550쪽, 주) 27.

2. 학술정보유통을 위한 저작권 관리와 법적 과제

학술저작물의 발간하는 기관은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권리귀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학술저작물의 게재와 동시에 저작권이 발간기관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관례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날로그 또는 무료제공을 염두에 둔 것이지 디지털화된 2차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유료제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⁸⁸⁾ 더욱이 유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권리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도 오픈엑세스 학술저작물을 적극 권장하거나 기관 저장고를 중심으로 오픈엑세스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⁸⁹⁾ 특히, 공적 재원으로 생성된 연구성과물과 2차 학술저작물은 100% 오픈엑세스로 제공한다는 목표를 단기간 안에 이루내야 한다. 또한 오픈엑세스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펼쳐지게 될 연구성과물과 학술저작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 민간영역의 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공유자원으로써 학술저작물 상업적 이용의 한계 설정

공유(public domain)라는 용어는 제한 없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한 형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제한된 개념일 수 있다. 지식재산의 공유는 실제로 저작권과 특허에 대해서만 존재하며, 주로 저작권 또는 특허가 만료된 저작물과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저작권과 특허를 공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포함해 혁신적인 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더 확장된 공유를 형성하는 데 강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88) 정경희·김규환, 위의 논문, 284쪽.

89) 다른 한편, 오픈사이언스 정책과 관련하여 신은정·정원교, 오픈사이언스정책의 확산과 시사점 (STEPI Vol. 216, 2017), 3쪽 비교.

학술저작물은 학회 누리집, 각 공공도서관 또는 민간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여러 기관과 국가지식포털 등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연구성과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에는 긍정적이며, 이용자에게 여러 편익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2차 저작물의 공개와 유통은 제한적이고 오픈액세스의 성과도 미비하다. 더욱이 다른 곳에서 무료로 제공 및 공유되고 있는 같은 학술저작물이 민간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의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은 공정이용과 저작권격권의 보호 측면에서 법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전문출판사의 개입 아래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픈액세스를 위한 최초 공표를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한 모델계약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일반인에 의한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반드시 무료로 자유이용을 할 수 있고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적이고 비상업적인 재이용권의 도입은 아마도 더욱 법적 안정성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오픈액세스 출판의 붕괴를 야기하거나 학술지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의 법적 상황에서 학자들에게 오픈액세스를 통하여 그들의 저작물의 최초 출판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출판은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저자에게 예를 들어 기관 저장고에서 오픈액세스 재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지금까지 많은 전문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히 많은 전문분야에서 지금까지 확립되고 잘 알려진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학자들의 관점에서 개개의 학술공동체의 출판문화가 그러한 변환과정에서 고려되고 출판의 자유가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선준·원유형,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법학논문집 제40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 웹진, “오픈엑세스와 공공저작물의 공유”, 23호, 2016, <http://kmmmedlib.tistory.com/177> (최근 접속일: 2017. 11. 8).
- 김규환·정경희,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특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34권 제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7.
- 김병일, “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논의”, 계간 저작권 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 김형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5.
- 공유마당, “공유마당 안내”,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090> (최근 접속일: 2017. 10. 11).
- _____,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CCL) 저작물이란?”,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093> (최근 접속일: 2017. 10. 11).
- 남영준·김규환·신은자·정경희, 글로벌 오픈엑세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6.
-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와 정보”: 김연희, 데이터베이스 개론, 한빛아카데미, 20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071&cid=58430&categoryId=58430> (최근 접속일: 2017. 11. 8).

- 민지애·전승규, “공유 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6 No. 7, 한국콘텐츠학회, 2016.
-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데이터이코노미, 한스미디어, 2017.
- 신은정·정원교, “오픈사이언스정책의 확산과 시사점”, STEPI Insight Vol. 2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 우지숙 외 11인, 공공 연구성과물의 공중접근정책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1.
- 장예영,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과 저작권법제 - 2016년 9월 14일의 DSM저작권지령안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제86호, 세창출판사, 2017.
- 정경희·김규환,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특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6.
- 정경희, “공공기금으로 작성된 논문의 오픈엑세스 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
- 한지영,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계간 저작권 2013 가을호.
- 홍재현,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Open Access in Deutschland: Die Strategie de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6, S. 7, https://www.bmbf.de/pub/Open_Access_in_Deutschland.pdf (최근 접속일: 2017. 11. 23).
-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EUA Roadmap on Open Access to Research Publications”, 4. Feb. 2016, <http://www.eua.be/activities-services/news/newsitem/2016/02/04/just-released-eua-roadmap-on-open-access-to-research-publications> (최근 접속일: 2017. 11. 15).

- Götting, Horst-Peter · Lauber-Rönsberg, Anne: Open Access und Urheberrecht, OdW 2015, 137 *et seqq.*
- Fehling, Michael: Von der kommerziellen Verlagsproduktion zum Open Access - Roll des Rechts beim Wandel wissenschaftlicher Publikationskanäle, in: Hoffmann-Riem, Wolfgang *et al.*, Innovationen im Recht, Nomos, 2016.
- Koof, Alexander: Senderecht und 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 im Zeitalter der Konvergenz der Medien, Mohr Siebeck, 2015.
- 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http://copyright.oak.go.kr/main.do>(최근 접속일: 2017. 11. 21).
- OAK Portal, “Open Access(오픈액세스)란?”, <http://www.oak.go.kr/about/aboutOak.do?menuSeq=80> (최근 접속일: 2017. 11. 8).
- _____, “보유현황”, <http://www.oak.go.kr/main/main.do> (최근 접속일: 2017. 11. 16).
- Pflüger, Thomas: Open Access-Regulier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 Regulierungsansätze im digitalen Zeitalter für den Bereich von Wissenschaftspublikationen in Zeitschriften, in: Dreier, Thomas · Fischer, Veronika · van Raay, Anne · Spiecker gen. Döhmman, Indra *et al.*, Informationen der öffentlichen Hand - Zugang und Nutzung, Nomos, 2016.
- Raue, Benjamin: Das Urheberrecht der digitalen Wissen(schaft)sgesellschaft, GRUR 2017, 11 *et seqq.*
- Referenten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Entwurf eines Gesetzes zur Angleichung des Urheberrechts an die aktuellen Erfordernisse der Wissensgesellschaft, S. 18,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RefE_UrhWissG.pdf?__blob=publicationFile&v=1 (최근 접속일: 2017. 11. 23).
- Schoch, Friedrich: Informationsfreiheitsgesetz: Kommentar, 2. Auflage, C.H. Beck, 2016.

Sosnitza, Olaf: Google Book Search, Creative Commons und Open Access, RW 2010, 225 *et seq.*

Spindler, Gerald · Schuster, Fabian *et al.*: Recht der elektronischen Medien: Kommentar, 3. Auflage, C.H. Beck, 2015.

현안분석 2017-05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2017년 11월 15일 인쇄
2017년 11월 15일 발행

발행인 | 이 익 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5,5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821-8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값 5,500원